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7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

4. 근거법령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동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마포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치안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1)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 (2)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 ①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②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 ③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4개 사항으로 규정
- (3)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으로서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마포소방서장, 서울지방노동청서부지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청소년·여성분야 등 전문가, 안전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 (4)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제4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5) 안 제6조에서는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6)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수행하며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7) 안 제9조에서는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8)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두되,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회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를 사항을 추진하도록 함
- (9)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은 협의회와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함
- (10)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
- (11) 안 부칙에서는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검토의견 >

- 동 조례안은 마포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기관 등 기타 유관 기관·단체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를 비롯한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2010. 5. 11일 법제처의 법령심의회위원회의 유권 해석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과 「경찰법」 제16조 등에 위배됨이 없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당해 치안협의회에 최소한도의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여도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